

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

-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내 자족1부지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의거 결정 및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-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6년 3월 26일

남 양 주 시 장

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

-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없음)
-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
 -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 - ☐ 교통시설(변경)
 - 도로 결정(변경)조서 (금회 변경되는 시설에 한함)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기정	중로	지급1	1	24~30	집산 도로	722	대로 지급1-1	중로 지급1-2	일반 도로	-	국고667호 ('11.11.15)	1단계:193m 2단계:529m
변경	중로	지급1	1	24~30	집산 도로	722	대로 지급1-1	중로 지급1-2	일반 도로	-	국고667호 ('11.11.15)	1단계:193m 2단계:529m (완화차로 폭원 일부 변경)
기정	중로	지급2	4	15~21	집산 도로	379	대로 지급1-1	중로 지급1-1	일반 도로	-	국고471호 ('13.08.02)	1단계 및 2단계구간 일부포함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변경	중로	지급2	4	15~18	집산 도로	379	대로 지급1-1	중로 지급1-1	일반 도로	-	국고471호 (13.08.02)	1단계 및 2단계구간 일부포함

주) 지정 사항은 2021년 10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14호 “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
관리계획 변경 고시”에 따른 결정내용임

주) 금회 도로변경은 중로1류 1개 노선(중로 지급1-1호선), 중로2류 1개 노선(중로 지급2-4호선)에 한함

○ 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중로 지급1-1	중로 지급1-1	▶ 자족1 도로변 일부 폭원 변경 - 폭원 : 24m~30m	▶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(차량진·출입 변경 및 가·감속 완화차로 변경) 반영에 따라 도로 폭원 일부 변경 ▶ 전체 폭원은 동일하나, 대상지변 완화차로 변경으로 27m → 24m 폭원 일부 변경
중로 지급2-4	중로 지급2-4	▶ 자족1 도로변 일부 폭원 변경 - 폭원 : 15m~21m → 15m~18m	▶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(차량진·출입 변경 및 가·감속 완화차로 변경) 반영에 따라 도로 폭원 일부 변경

3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가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■ 자족시설용지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(㎡)	획 지		비고
				위 치	면적(㎡)	
기정	합 계		92,878.20	-	92,878.20	-
변경			93,685.62	-	93,685.62	-
기정	자족1	자족1	29,528.00	다산동 산17-10 일원 (다산동6242)	29,528.00	대지분할가능선에 의한 획지분할 가능1단계
변경			30,335.42		30,335.42	
기정	자족2	자족2	9,516.00	다산동276-5 일원	9,516.00	획지분할불가 2단계
기정	자족3	자족3	13,689.50	다산동 산17-23 일원 (다산동6243)	13,689.50	획지분할불가 2단계
기정	자족4	자족4	6,027.00	다산동251-3 일원	6,027.00	획지분할불가 2단계
기정	자족5	자족5	4,000.00	다산동 산22-2 일원	4,000.00	획지분할불가 2단계
기정	자족6	자족6	30,117.70	다산동250-1 일원	30,117.70	획지분할불가 2단계

주) 지정 사항은 2021년 10월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-414호 “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도시
관리계획 변경 고시”에 따른 결정내용임

4.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5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)

가. 차량 진·출입에 관한 사항(변경)

구 분 (가구번호)		계획내용	비고
기 정	자족1~자족6 (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)	• 대지내로의 차량 진·출입구는 “차량진·출입불허구간”이외에 설치한다. 단,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	결정 도면 참조
변 경	자족1~자족6 (자족기능 확보시설용지)	• 대지내로의 차량 진·출입구는 “차량진·출입불허구간”이외에 설치한다. 단, 둘이상의 도로에 면한 대지는 도로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 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도로의 각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. ※ 단, 자족1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북측 비상차량진출입구 설치 허용	결정 도면 참조

■ 관련도면 : 게재생략 (남양주시청 미래도시과 비치)